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7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준혁·한창민·문정복

이수진 • 모경종 • 강득구

권칠승 • 윤종오 • 황운하

안규백 • 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 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 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 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 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후단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 신설> 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 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 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